

대학원 무용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무용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무용학과 소속 교수들은 무용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본 대학원 무용학과에서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을 둔다.

제5조 (과목개설)

제6조 (교·강사 배정)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입학한 후 지도교수를 정하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대학원 주임 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과정 : 사단법인에서 인정한 무용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또는 무용관련 학술지 투고 및 게재 시 면제. 외국인 학생은 자국에서 인증한 무용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박사과정 : 사단법인에서 인정한 무용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게재(개인저자, 4학기이내에 게재, 논문1편)시 면제. 외국인 학생은 자국에서 인증한 무용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임.

※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임.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으로 면제.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으로 면제. ※한국어 성적은 TOPIK 4급 이상으로 지정.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2학기 말 학위취득 방법(학위논문, 학위작품 중 택1)을 선택하여 웹정보 시스템에서 입력, 출력 후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함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2학기, 3학기에 학위작품발표 오디션 시행 및 작품계획서 작성

제14조 (예비발표)

오디션은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반드시 시행

제15조 (논문심사위원)

3인(지도교수 + 교내교수 2인)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학위작품 심사절차 : 2학기, 3학기 오디션 시행, 4학기 학위작품발표회 및 보고서 작성·제출

학위작품 심사방법 : 합격기준은 평균 70점 이상으로 합격으로 인정하며, 예술성(25), 표현성(25), 안무성(25), 성실성(25)을 기준으로 심사

초연창작품을 기준으로 안무자의 출연(유·무)를 결정

학위작품발표회는 최소 10분 이상 40분 이내의 창작품으로 한다.(지도교수와 협의 하에 시간 출연 여부 등이 조절될 수 있다.)

작품제작 시 음악·의상 등은 안무자의 지원을 기준으로 한다.

오디션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합격 판정으로 학위 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함.

학위작품보고서 제출 시 작품 사진은 필수로 포함.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무용학과로 학위작품 제작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표절검사결과 확인서와 함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커버 필요 없음.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함.

※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무용학과 전임교원과 무용학과 대학원
우회 임원으로 한다.